

창녕군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모집 재공고

「영유아보육법」 제2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, 「창녕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」 제7조에 따라 창녕군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합니다.

2020년 5월 8일



1. 위탁시설 개요

어린이집명	소재지	시설규모	보육정원	개원예정
창녕코아루 어린이집	창녕군 창녕읍 말흘5길 62, 창녕코아루더파크 401동 3층	· 연면적: 183.75㎡ (55.58평) ※ 공동시설(ELV, 계단) 제외 : 160.51㎡(48.55평)	27명	2021. 1월

2. 위탁기간: 5년(2020. 7. 1. ~ 2025. 6. 30.)

3. 운영체 신청자격: 사회복지법인, 비영리법인, 단체, 개인

- 가. 공고일 현재 창녕군 내 주 사무소나 주소를 두고 보육사업 경력에 있는 사회복지법인, 비영리법인이나 등록 단체
- 나. 공고일 현재 창녕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「영유아보육법 시행령」 제21조의 【별표 1】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

< 신청자격 제외대상 >

-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
- 최근 5년 이내 관련 법령 위반으로 위탁 취소 및 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(자)
- 위탁체 명의로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
- 주된 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
- 개인 위탁체일 경우 공고일 현재 어린이집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자 (단, 창녕코아루어린이집 위탁 시작 전까지 기존 어린이집의 원장직을 면직 또는 기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자는 제외)
-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최근 3년 이내 행정기관으로부터 운영정지 1개월 이상 또는 자격정지 1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는 법인·단체·개인
- 그 밖에 지자체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

4. 운영 조건

- 가. 위탁범위: 영유아보육법 등에 의한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
- 나. 운영재원: 정부지원 보조금, 보육료 및 위탁운영자 부담금
- 다. 영유아보육 관련 법령, 연도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, 창녕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, 창녕군의 보육사업계획,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관리·운영계약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, 제반규정 및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음
- 라.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(영아·장애아·다문화아동·기타 연장형 보육) 중 2개 이상을 실시하여야 함
- 마. 보건복지부 「보육사업 안내」에 따른 보조금 지원 가능
 - 보조금은 위탁운영 시작 후 지원기준에 적합 시 지원 가능
- 바. 시설운영 중 부족 경비 발생 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과 시설 운영 능력이 있어야 함
- 사.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,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음

5. 사업설명회 개최

- 가. 일 시: 2020. 5. 14.(목) 14:00(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)
- 나. 장 소: 창녕군청 2층 군정회의실
- 다. 대 상: 위탁운영을 희망하는 자 중 사전 신청자에 한 함
- 신청기한: 2020. 5. 13.(수) 15:00한
 - 접 수 처: 행정복지국 노인여성아동과 유선 접수(☎055-530-1414)
- 라. 내 용: 시설기본 현황, 위탁시설 업무, 위탁절차 등

6. 신청서 접수

- 가. 접수기간: 2020. 5. 21.(목) ~ 2020. 5. 27.(수) / 7일간
- 나. 접수장소: 창녕군청 행복관 1층 행정복지국 노인여성아동과
- 다. 접수방법: 방문접수(우편 및 인터넷, 대리접수 불가)
- ※ 접수시간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근무시간(09:00~18:00)으로 함
(평일 점심시간 12:00~13:00, 토·일·공휴일 접수 불가)
- 라. 제출서류: 15부(원본 1부, 사본 14부)
- 1) 【붙임1】 서식을 첫 페이지로 하여, 【붙임2】 목차 순서대로 페이지 표시하고 책자 제본(A4종 규격)하여 접수 시 제출
 - ※ 원본 1부(집계사용): 주민등록등초본, 가족관계증명서, 건물토자금용 자료는 원본에만 포함
 - ※ 사본 14부: 책으로 제본하여 제출(스프링 처리된 자료 제출 불가)
 - ※ 심사자료는 양면인쇄, 쪽수표시, 목차작성, 목차별 색인지, 띠지 표시
 - ※ 운영계획서 및 예산서 등은 보육정원 기준, 취약보육 2가지 이상으로 작성
 - ※ 신청서 양식에 구비서류 및 증빙서류가 명시되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
 - ※ 신청서 양식: 창녕군 홈페이지(www.cng.go.kr-고시공고) 다운로드 가능
 - 2) 제출서류의 발급일자는 공고일(2020. 5. 8.) 이후여야 함
 - 3) 제출서류 목록
 - ①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【붙임1】
 - ②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【붙임2】 - 증빙자료 첨부

증빙서류	운영체(자)			비고
	법인	단체	개인	
■ 어린이집 위탁신청서	○	○	○	■ 신청서식 【붙임1】
■ 소개서(법인·단체)	○	○		
■ 운영체에 관한 서류 - 이력서(증명사진) 및 자기소개서	○	○	○	■ 법인·단체의 경우 대표자, 원장 내정자
■ 법인정관, 등기부 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	○			
■ 단체등록증 및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		○		
■ 어린이집 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등	○	○		
■ 2019년 법인(단체) 총괄예산 결산서	○	○		
■ 법인의 목적사업 확인 가능한 서류	○			■ 목적사업 중 보육사업 명시 여부 확인
■ 복지 및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■ 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확인 서류 (자원봉사, 육아종합지원센터 조력 활동 등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)	○	○	○	■ 해당자만 제출
■ 2019년 법인(단체) 사업실적 및 2020년 사업계획서	○	○		
■ 최근 5년간 평가인증 참여확인서 및 결과서	○	○	○	■ 원장
■ 운영체에 관한 서류 - 원장 자격증(원본지참) - 졸업증명서(최종학교, 관련학과) - 경력증명서 등(보육 및 아동복지관련)	○	○	○	■ 법인·단체의 경우 대표자, 원장 내정자
■ 기타 자격증(사회복지사, 보육교사, 유치원정교사, 영양사, 간호사, 간호조무사, 소방관리원 등)	○	○	○	■ 해당자만 제출
■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	○	○	○	■ 해당자만 제출
■ 2020년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-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사업계획 등 - 특수교육 및 취약보육 운영계획 등 - 시설운영 및 관리·평가에 관한 계획 등 - 2020년 세입 세출 예산서 등	○	○	○	■ 영유아의 신체, 정서언어, 사회성 및 인지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교육 내용 ■ 예산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준수하여 작성

증빙서류	운영체(자)			비고
	법인	단체	개인	
■ 건물(등기부 등본-공통) - 아파트, 다세대, 연립: 공동주택 가격확인원 - 단독주택: 주택가격확인원 - 상가, 기타: 세목별납세증명서(비고란 과표 기록) - 전·월세 계약서(확정일자 필)	○	○	○	■ 재산입증자료는 공고일 전일까지의 취득분에 한하여 인정
■ 토지 : 공시지가확인원	○	○	○	
■ 금융재산 - 예금잔액증명서(공고일 전일 현재 잔액증명) ※ 정기예금만 포함, 보험 등 보장성 제외 - 부채증명서(등기부등본 설정액 필수) - 개인신용정보조회서(공고일 전일 현재) ⇒ 본인 및 배우자 ⇒ 한국신용정보원(www.kcredit.or.kr) 등 신용정보(평가)회사 발급	○	○	○	■ 소유권 인정 기준 - 법인(법인명의 재산) - 단체(단체명의 재산) - 개인(부부 재산) ■ 한국신용정보원 ☎1544-1040 www.kcredit.or.kr
■ 재정상태 및 약서	○	○	○	【붙임 3】
■ 채용신체검사서	○	○	○	■ 법인·단체의 경우 대표자, 원장 내정자
■ 개인정보수집·활용동의서 등	○	○	○	【붙임 4】 , 【붙임 5】

7. 선정심사 및 소견발표

가. 서류심사

- 1) 일 시: 2020. 5. 28.(목) ~ 2020. 6. 5.(금)
- 2) 심사항목: 신청자격(창녕군 주소 등재, 원장자격, 신청자격제외 여부)
- 3) 결과통보: 2020. 6. 8.(월) 한 ※ 개별 유선 통보

나. 면접심사

- 1) 일 시: 2020. 6월 중 ※ 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해 면접일 개별 유선 통보
- 2) 장 소: 창녕군청 2층 군정회의실
- 3) 소견발표: 신청자(법인 및 단체는 원장 내정자)는 면접심사 당일 선정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견발표 및 위원의 질의에 응답하여야 함(불참 시 포기 의사로 간주)
 ※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설명할 발표자료(PPT)는 이동식 메모리(USB)로 당일 지참

8. 위탁체 선정기준(배점)

- 보건복지부 2020년도 보육사업 안내 적용
-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권장 표준안
-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공통심사 기준표 및 세부항목별 평가기준안

구 분	계	위탁체의 공신력	위탁체의 시설운영 실적	위탁체·원장 (내정자)의 전문성	어린이집 운영계획	재정능력
배 점	100	10	10	35	40	5

9. 위탁체 선정방법

가. 제출된 서류에 따라 면접심사

- 1) 신청자는 면접심사 당일 별도 선정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어린이집 운영계획 등의 소견을 발표하여야 함
- 2) 설명 10분(프리젠테이션 가능) 내외(시간엄수), 질의응답 10분(재량)
- 3) 불참자는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(신청 포기) 간주함
- 4) 법인 및 단체의 경우 발표자는 내정된 원장(어린이집 위탁신청서 기재된 원장)으로 함(향후 1년간 변경 금지)
 ※ 신분증, 재직증명서 등 해당 법인·단체의 소속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히 지참

나. 위원별로 위탁운영 신청자 심사 채점표 작성

다. 기 타

-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·최저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하고 합산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이며 최다 득점을 받은 운영체를 위탁체로 결정 (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 계산)
- 신청자가 단수인 경우에도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이어야 함
- 선정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한 결과 동점인 경우, 심사항목 중 어린이집 운영계획, 위탁체·원장(내정자)의 전문성, 시설운영 실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함

- 다수 운영체가 신청하였더라도 심사결과, 신청 운영체가 모두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재공고하여 모집
- 지정된 기일까지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위탁운영자 결정을 무효로 하며, 차순위 득점자와 계약할 수 있음

10. 위탁체 결정 및 통지

- 가. 결정방법: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
- 나. 결과통지: 2020. 6월 중
 - ※ 군청홈페이지 공고 및 선정된 자에 한하여 개별통지

11. 유의사항

- 가. 제출된 서류는 접수 후 열람·공람 및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며, 증빙자료 등 미첨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하며,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나. 관련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
- 다. 모든 확인서 등 제증명된 서류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것만 인정됨
- 리. 자격증 등 기타 필수 신청서류가 누락되었을 경우 접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목록순서대로 제본(목차 및 페이지 부여, 간지·띠지 처리)
- 마. 제출서류 중 원본지참이라고 명기한 경우 원본 미지참 시 사본서류를 인정하지 않음
- 바. 제출된 서류의 내용에 대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위탁자 선정을 무효로 처리하고 선정 이후 결격사유 발생 시 선정이 취소됨
- 사. 선정심사위원회 구성, 심사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, 평가결과는 비공개로 함

12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녕군청 행정복지국 노인여성아동과 여성보육담당 (☎055-530-1414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